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
합 계	9,202,362,077	9,080,283,615	122,078,462
일 반 회 계	8,275,593,593	8,184,555,154	91,038,439
특 별 회 계	926,768,484	895,728,461	31,040,023
기 타 특 별 회 계	926,768,484	895,728,461	31,040,023
농어촌주택사업	9,401,911	4,300,000	5,101,911
의료급여기금	569,501,544	554,492,978	15,008,566
동 부 권	36,655,749	36,499,894	155,855
학교용지부담금	20,504,659	9,735,306	10,769,353
소 방	289,947,765	289,944,629	3,136
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	756,856	755,654	1,20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“154,811,322천원”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187,7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.